

이천 중리 우미 Lynn 어반퍼스트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세대수의 3% 범위)

※ 특별공급 신청은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앱으로 통한 인터넷 청약이 원칙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자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조건을 모두 갖춘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이천시 또는 수도권에 거주 ②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및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해야 함 ※ 무주택기간은 청약자 및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 기준 산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관련 법령에 의함 |
| 당첨자 선정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이천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 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릅니다.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 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 유의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분양권·입주권 등 포함) 국토교통부 「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에 따라 외국인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 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을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23.11.1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